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26-30호

2026년도 제1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공고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 제한경재채용 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공무직 근로자 (사무보조)	1명	보호복지회 기관 담당자·영치금·우편물 관리, 의무(간호) 업무 및 기관장실 업무 보조 등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 (정년 60세)

○ 근무형태 : 주 5일(월~금), 주간근무(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포함

○ 보수기준 : 월 2,287,730원 상당(세전, 급식비 포함)

○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 기타 : **근무형태 및 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 변경은 근로자 및 기관 간 협의될 경우 가능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 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잘(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2.「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외국국적 포기 시 임용 가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나. 자격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국가전문자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에 한함

다.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라. 우대사항 [적극적 서류전형에 한함]

① 전산(통신·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2개 이상 자격증 소지 시 배점기준이 높은 상위 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요건 내 기재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	배점 기준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30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20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舊 워드프로세서 1급)	10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응시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응시인원 11명 이상**인 경우)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10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우대사항 적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① 소통·공감능력, ② 국가관 및 직무태도, ③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윤리의식과 책임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6. 9. 28.(월) ~ 10. 13.(화)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026. 10. 8.(목) ~ 10. 13.(화)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온라인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6. 10. 19.(월)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정 개별통지
면접시험 (예정)	2026. 10. 28.(수)	○ 장소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026. 10. 30.(금)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채용 계약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채용(계약)일 (예정)	2026. 11. 9.(월)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점검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3.(화), 평일

※ 접수시간은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우 14122)	031-341-9130	인사담당 (백승현)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접수 불가, 12시 ~13시 점심시간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응시번호를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 예정. 우편 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 력 서	별지 제3호 서식
4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응시자격 확인
5	운전면허증 사본	응시자격 확인
6	장애인 증빙 서류	응시자격 확인
7	자기소개서	A4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8	직무수행계획서	A4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별지 제6호 서식
10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자필 서명 필수 별지 제7호 서식
11	공정채용확인서	자필 서명 필수 별지 제8호 서식
12	주민등록초본	생년월일만 표시,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X
13	최종학력 증명서	심사위원 제척·기피 확인용
14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별지 제9호 서식
15	가점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지 제13호 서식)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보 후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031-341-9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9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안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분야	성 명	생년월일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1. 응시원서		
2. 이력서 자필 서명 필수		
3.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4. 운전면허증 사본		
5. 장애인 증빙 서류		
6. 자기소개서 A4 2매 이내로 작성		
7. 직무수행계획서 A4 2매 이내로 작성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9.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자필 서명 필수		
10. 공정채용확인서 자필 서명 필수		
11. 주민등록초본 생년월일만 표시,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X		
12. 최종학력 증명서		
13. 성범죄·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4. 가점사항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유무란에 “O” 표시

*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1 ~ 13 필수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사무보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법무부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공무직근로자)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
3.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해당', '해당 없음'으로 기재
6. 점선 아래 응시표에도 성명 기재, 날짜는 응시원서 작성일자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 소				
연 락 처				

경력	기 간 (년 월)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격사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명	시 행 처

병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상훈	일 자	종 류	사 유	발령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일 (년도기재X)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

지 원 동 기

【작성요령】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

②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자기소개서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 작성요령을 읽은 후 삭제한 다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 타 사 항

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생일 (년도기재X)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

【작성요령】

①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변경 불가

②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업무 이해도, 업무추진전략,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 작성요령을 읽은 후 삭제한 다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 채용 및 관리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국적, 병역, 학력(학교명 등 포함), 자격·경력·학위 등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범죄경력자료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직근로자 채용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직근로자 채용관리	**자격, 경력, 단증**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공무직근로자 채용관리 (비위면직여부조회)	비위면직 해당여부 확인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① 수집 • 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 • 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해당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기간제근로자로 취업(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안양동안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